##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68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용우·신장식・박지혜

전진숙 · 정혜경 · 박홍배

이학영 · 장철민 · 진선미

임오경 · 한창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 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 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역주민·전문가·사업장 소 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본문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평가 등) ① 제11조의 2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을 확인·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배출저감 방안 또는 배출저감 실적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이행확인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
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	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	5
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u>	<u>고</u>
<u>개할 수 있다</u> . 다만, 제4항에	<u> 개하여야 한다</u>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	
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	
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	
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1조의3(화학물질 배출저감계
	획서 이행 확인ㆍ평가 등)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저
	감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배출

<u>저감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u> <u>야 한다.</u>

- ②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을 확인・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 ④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 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 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배출저감 방안 또는 배출저감 실적을 개 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 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행확인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협

 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